



EPR 제도 확대에 따른 포장업계 변화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n Packaging Industry

EPR 제도 의의 및 시행 경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에 앞서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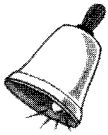
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PR 제도는 1990년부터 독일, 프랑스, 체코, 헝가리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환경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일본은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가 매년 사업자에게 용기 포장의 재활용 의무량을 결정하여 부과하며 지자체가 용기포장의 분리수거, 선별, 압축 등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는 지자체가 수집·보관한 용기포장을 인수하여 재활용하며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생산자의 이러한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체계로 법이 시행중이다.

해외 EPR 제도 시행 사례

독일의 경우에는 1991년 제정된 '포장폐기물법'에 의거, 생산자에게 소비 후 제품에 대한 수집·선별·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유리, 철, 알루미늄, 종이·판지, 플라스틱, 복합재질에 재활용목표율을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한



업계진단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생산자 공동으로 수집·선별·재활용 책임을 대항할 생산자 기구(DSD)를 구성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는 '포장법'에 따라 1993년부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왔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포장용기의 회수를 위해 <Eco-Emballages>라는 생산자 기구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국내 EPR 제도 시행확대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EPR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개선, 지난 해 1월 1일부터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게다가 올해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에 대해서도 EPR 제도가 적용, 이들 제조·사용업자 및 수입업자는 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공사에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업계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름류의 경우 재활용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미이행에 따른 비용 = 미이행처리량(kg)×재질별 과태료×미이행처리비율에 따른

부과금"이 부과된다.

단일재질 PS, PP, PE의 경우 kg당 벌금은 327원, PET 178원, 발포폴리스틸렌 317원이 비 부과되며 PVC의 경우 단일·복합재질에 관계없이 981원의 높은 부과금을 내야한다.

기타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해서는 468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미이행비율이 5% 미만일 경우 15%, 5~15%는 20%, 15~30%일 경우 25%, 30%를 초과했을 경우 30%의 벌금이 가산되게 된다.

포장재별 재활용단체 활동 방안

포장재 관련 EPR 대상 품목인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비롯,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유리병재활용공제사업본부,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한국PET병재활용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등 총 7개 재활용관련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 방향을 살펴보면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유리병재활용공제사업본부는 전국 64개 폐유리병재활용 업체와 회수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 권역별 책임지역을 설정, 지역 내 발생하는 유리병의 수집 및 처리 책임을 부여, 발생하는 폐유리병을 회수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생산자(필러)로 하여금 최소의 비용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했다.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의 경우 전국에 30개사의 폐 금속캔 회수·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철캔과 알루미늄캔을 선별·압축하여 철캔은 제철·제강사로 알루미늄캔을 재생업체에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PET병재활용협회는 PET 수집, 재활용 및 재생제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비롯, PET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각종조사 및 지원을 하는 등 PET병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국민홍보활동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지난 해 상반기 재활용사업자 56개소에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4,877톤에 대한 지원금 85,179천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해 3월에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전자제품제조업체, 음식료품·의약품제조업체를 비롯해 농수축산업 및 유통업체,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등 총 130개소를 대신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의 경우 국내 최초로 RPF 품질인증을 취득, 고품연료화 시범공장(KRS)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PSP 전용 감용기를 지원하고 수거·선별센터를 구축하는 등 플라스틱재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재활용관련 단체가 각 포장재 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등 궁극적으로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 재활용 시책에 부흥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

는 현실을 보면서, EPR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산하 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PR 제도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EPR 제도가 궁극적으로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일만큼 폐기물의 감량화 정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고찰과 폐리물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효율성에 이바지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 용이 소재의 사용량, 환경디자인 상품의 개발정도와 같은 기업의 기술혁신, 신분류기술 개발, 고품연료화 기술, 유화기술과 같은 재활용사업자의 신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EPR 제도 시행이 야기시킨 시민단체나 소비자의 참여 정도, 재생원료와 재생상품의 소비량 변화, 기업의 반발이나 저항의 빈도, 위반횟수, 재활용 목표율의 미이행 정도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EPR 제도가 시행되고 점차 전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현재, 무조건적인 재활용 이행률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예측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자세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전략을 써야 하는 것이 보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